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대상자: 표 참조
2. 공고기한: 2025. 8. 27. ~ 2025. 9. 29.
3. 공고방법: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공고일자	공고사유
1	김*울	2008.08.21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2	정*진	2008.08.19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3	염*원	2008.08.12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4	최*인	2008.08.30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5	강*하	2008.08.18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6	이*민	2008.08.01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거주불명
7	최*희	2008.08.27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8	석*엽	2008.08.19.	2025.09.01.~2026.08.31.	2025.08.27.	폐문부재

※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에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및 신분확인 신분증 지참)하시어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자: 이영진/문의전화: 031-5189-4465)

2025년 8월 27일

동탄4동장

